

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

- 집중신청기간 3.2.(월) ~ 3.20.(금),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-

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onelin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

■ 지원내용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교육급여	부교재비(134,000원) 학용품비(72,000원)	부교재비(212,000원) 학용품비(83,000원)	부교재비(339,200원) 학용품비(83,000원) 교과서·입학금·수업료
교육비	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학비, 급식비 등		

■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
-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.
- 교육비 납부유예 :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(☎ 546-5601)로 문의 바랍니다.

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	
기 간	2020년 3월 2일(월) ~ 3월 20일(금)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	
자원 금여	▪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)	
대상 교육 비	▪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	
신청 방법 (택1)	①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	② 온라인 신청 ▪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▪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://onelink.moe.go.kr)
제출 서류	▪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	

※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·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
■ 문의 : 에듀콜센터 1544-9654, (교무실) 546-5712, (행정실) 546-5601

2019. 12. 26

금 구 초 등 학 교 장



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

- 집중신청기간 3.2.(월) ~ 3.20.(금),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-

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(www.bokjiro.go.kr 또는 oneclick.moe.go.kr)으로 신청 바랍니다.

■ 지원내용

구분	초등학생	중학생	고등학생
교육급여	부교재비(134,000원) 학용품비(72,000원)	부교재비(212,000원) 학용품비(83,000원)	부교재비(339,200원) 학용품비(83,000원) 교과서 · 입학금 · 수업료
교육비	방과후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, 인터넷통신비), 고교학비, 급식비 등		

■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

-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** :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**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.**
- 교육비 납부유예** :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(☎ 546-5601)로 문의 바랍니다.

■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	
기 간	2020년 3월 2일(월) ~ 3월 20일(금) *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	
지 원 금 여	▪ 가구의 소득과 재산(자동차 포함)을 계산한 월 “소득인정액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학생(4인 가구 기준 월 237만원)	
대 상 교 육 비	▪ 기초생활(교육급여)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 차상위대상자, 가구의 “소득인정액”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	
신 청 방 법 (택 1)	① 방문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	② 온라인 신청 ▪ 복지로(http://www.bokjiro.go.kr) ▪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(http://oneclick.moe.go.kr)
제 출 서 류	▪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, 각종 증빙자료	

※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, 교육비는 시·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
■ 문의 : 에듀콜센터 1544-9654, (교무실) 546-5711, (행정실) 546-5601

2019. 12. 26
금 구 초 등 학 교 장
